

「암검진실시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건강검진실시기준과 상이한 규정을 일치시키고, 암검진 비용 부담을 명확히 하며, 암검진 사후관리 및 검진 결과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암검진비용 명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수검자의 암검진에 대한 본인부담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함을 명시

나. 공단의 현지조사 권한 부여 및 재검진 기준 도입

- 1) 공단의 현지조사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환수에 대한 위반 사항만을 통보하도록 하던 것에서 환수와 무관한 위법사항 전반에 대하여 발견시 통보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함
- 2) 검진기관의 부당한 검진행위로 검진결과에 명백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수검자의 권리 보장

다. 결과활용동의서의 작성 및 보관방안 마련

건강검진 결과의 활용 등 규정을 신설하여 결과 활용의 법적 근거가 되는 결과 활용 동의서를 작성·보관토록 규정

라. 간암 고위험군 선별검사 폐지

일반건강검진 내 도입으로 정비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간암 고위험군 선별검사에 대한 규정을 삭제

마. 기타사항

암 검진 후 구비하여야 할 서식을 추가하며, 건강검진실시기준과 용어를 통일하는 등 기존 고시의 미비한 점을 개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6-95 호

「암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암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02호, 2014. 11. 1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6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암검진실시기준」 일부개정

암검진실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수검예정자”를 “수검 예정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의 문진표”를 “별지 제1호서식의 문진표 및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의 암검진 결과 기록지”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검 예정자가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를 “다음 각 호의 지역의 검진대상자에게”로 한다.

제10조제2호 중 “전체”를 “당해연도 수검예정”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3조에 따른 암검진 대상자중 제10조에 따른 암검진비용 지원 대상자를 제외한 자의 암검진비용은 공단이 검진비용의 100분의 90을, 수검자가 100분의 10을 각각 부담(자궁경부암 검진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한다. 다만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수검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공단이 부담한다.

제12조제3항 중 “지급계좌”를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지급계좌”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검진비용의 환수)”를 “(검진비용의 환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3항”을 “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① 공단은 암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 하기 위하여 암검진기관 또는 출장검진 현장을 방문하여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공단이 암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특별 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그 위반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분사유 발생여부
2.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검진을 실시 하였거나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② 공단 등은 제1항에 따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및 「의료급여법」 제23조에 따라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단, 별표4의 검진비용 환수 기준에 명시된 위반 사항은 해당 환수 기준을 따른다.

③ 공단은 검진기관의 부당한 검진행위로 인해 수검자의 검진결과에 명백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수검자가 재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제15조 및 제16조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건강검진 결과의 활용 등) ① 공단과 검진기관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8조 및 제19조와 「암관리법」 제13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검진자료를 활용하거나 수검자에 대한 사후관리,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를 위해 수검자 또는 보호자에게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건강검진실시기준 별지 제19호서식)"를 작성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검진기관이 제1항에 따라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검진비용을 청구할 때 검진기관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에 송부하고, 공단 지사는 그 동의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검진자료를 활용함에 있어 필요한 검진자료의 수집·관리, 개인정보보호 등 세부사항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8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5조(종전의 제14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이”를 “공단이 별도로”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단은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별표1, 별표2, 별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3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부터 제1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는 2017. 1. 1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암검진 실시 절차 등) ① 국 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라 한다)은 영 제6조제2호에 따 른 수검 예정자(이하 " <u>수검 예정</u> <u>자</u> 라 한다)에게 암검진 실시 방 법, 절차 및 수검 예정자임을 알 수 있는 건강검진표를 사전에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 보 건소는 수검예정자에게 유선 등 의 매체를 활용하여 암검진에 대한 추가적인 안내를 할 수 있다.	제7조(암검진 실시 절차 등) ① - ----- ----- ----- " <u>수검 예</u> <u>정자</u> "----- ----- ----- ----- ----- -----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암검진기관은 암검진 실시에 앞서 <u>별지 제1호서식의 문진표</u> 를 구비하여야 하고, 대상자는 암검진기관의 안내에 따라 해당 문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④ ----- ----- <u>별지 제1호서식의 문진</u> <u>표 및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u> <u>지 제14호서식까지의 암검진 결</u> <u>과 기록지</u> -----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출장검진) ① 「건강검진기 본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받 은 암검진기관은 <u>수검 예정자가</u>	제8조(출장검진) ① ----- ----- ----- ----- <u>다음 각 호</u>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출장하여 암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1. 2. (생략)

② (생략)

제10조(암검진 비용 지원 대상자)

「암관리법」(이하 "법"이라 한
다)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암검진
비용 지원 수검자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생략)

2.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의 규정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
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고하는
선정기준액(직전년도 11월 기
준으로 전체 건강보험가입자의
하위 50% 수준) 이하에 해당
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그 피
부양자

제11조(검진비용의 부담 등) ①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설>

의 지역의 검진대상자에게 ---

---.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암검진 비용 지원 대상자)

-----.

1. (현행과 같음)

2. -----

----- 당해연도 수검예정 -----

제11조(검진비용의 부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3조에 따른 암검진 대상자
중 제10조에 따른 암검진비용
지원 대상자를 제외한 자의 암

③・④ (생략)

제12조(검진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② (생략)

③ 공단은 검진기관의 검진비용을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검진기관의 지급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 ~ ⑦ (생략)

제13조(검진비용의 환수) ① 공단 등은 암검진기관이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검진기관 지정 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한 것이 확인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및 「의료급여법」 제23조에

검진비용은 공단이 검진비용의 100분의 90을, 수검자가 100분의 10을 각각 부담(자궁경부암 검진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한다. 다만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수검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공단이 부담한다.

④・⑤ (현행 제3항・제4항과 같음)

제12조(검진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지급계좌-----.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3조(검진비용의 환수 등) ① 공단은 암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암검진기관 또는 출장검진 현장을 방문하여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이때 공단이 암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사

따라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단, 별표4의 검진비용 환수 기준에 명시된 위반 사항은 해당 환수금액)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검진비용 환수 대상 및 금액을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실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그 위반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분사유 발생여부
2.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거나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② 공단 등은 제1항에 따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및 「의료급여법」 제23조에 따라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단, 별표4의 검진비용 환수 기준에 명시된 위반 사항은 해당 환수 기준을 따른다.

③ 공단은 검진기관의 부당한 검진행위로 인해 수검자의 검진 결과에 명백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수검자가 재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공단 등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진비용을 환수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당 검진기관 또는 수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 제2항 및 제4항

-----.

제14조(건강검진 결과의 활용 등)

①공단과 검진기관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8조 및 제19조와 「암관리법」 제13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검진자료를 활용하거나 수검자에 대한 사후관리,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를 위해 수검자 또는 보호자에게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건강검진실시기준 별지 제19호 서식)"를 작성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검진기관이 제1항에 따라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검진비용을 청구할 때 검진기관 소재지 관할 공단지사에 송부하고, 공단 지사는

<신 설>

제14조(운영세칙)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점검진 실시에 관한 세부적인 운영사항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 동의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검진자료를 활용함에 있어 필요한 검진자료의 수집·관리, 개인정보보호 등 세부사항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8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5조(운영세칙) -----

공단이 별도로 -----

- 이 경우 공단은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제16조(규제의 재검토) -----

-----,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별표1]

암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

구 분	검사항목	검진비용(분류번호)	대상자 ^{주6)}	검 사 방 법
공 통	1. 암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 문진과 진찰 및 상담 ○ 결과통보 및 입력 등	가-1 (AA254)×60%	○ 암검진 대상자	○ 위장조영검사, 유방촬영, 대장이중조영검사 등 방사선영상진단과 조직검사, 자궁경부세포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위 암	1. 위장조영검사 ○ 촬영 및 판독료 ○ 필름료 및 재료대 - 10"×12": 6매 ○ CR(DR), Full PACS ○ 조영제 및 전 처치재료	다-201 (HA010) 치료재료 금액표 ^{주1)} 방사선영상진단료 ^{주2)} 약제 금액표 ^{주3)} · 바륨액(barium sulfate) 300ml · 발포과립(sodium bicarbonate, tartaric acid) 3g	○ 위장조영검사 희망자	○ 의사는 수검자의 금식 여부 및 과거 병력 등을 확인해야 한다. ○ 위장조영검사는 직접촬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반드시 다음의 영상은 포함되어야 한다. - 앙와위(supine) 이중조영 영상 - 복와위(prone) 단일조영 영상 - 기립위 압박 영상 - 식도하부 및 식도-위 연결 부위 영상 - 45도 우측후면사위(right posterior oblique, RPO) 영상 - 45도 좌측후면사위(left posterior oblique, LPO) 영상 ○ 위장조영검사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반드시 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검진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 분류코드711, 성분코드 113903ASS - 분류코드711, 성분코드 312500AGN
	2. 위내시경 검사 ○ 검사료 ○ 주사약제 ○ 주사료	나-761 (E7611) 약제 금액표 ^{주3)} (atropine sulfate 1ml, hyosine butylbromide 20mg) 상대가치분류번호 마-1	○ 위내시경 검사희망자 또는 위장조영검사에서 위암이 의심되는 자	○ 위내시경검사는 의사가 직접 실시한다. ○ 의사는 검사 전 수검자의 금식 여부와 출혈 경향, 과거 병력 등을 확인해야 한다. ○ 의사는 위내시경 검사 도중에 필요한 경우 이물제거술을 실시할 수 있다. ^{주4)}

구 분	검사항목	검진비용(분류번호)	대상자 ^{주6)}	검 사 방 법
	3. 조직검사 ○ 내시경하 생검 ○ 생검용 FORCEP ○ 병리조직검사	나-854[나-761 (E7611)×20%] 치료재료 금액표 ^{주1)} 나-550 (C5911) 1-3개 (C5912) 4-6개 (C5913) 7-9개 (C5914) 10-12개 (C5915) 13개 이상	○ 위내시경검사 도중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실시	○ 감염예방을 위한 내시경 세척 및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 아트로핀(분류코드 124, 성분코드 111802BIJ), 부스코판(분류코드 124, 성분코드 172302BIJ) ○ 병리조직검사는 병리과 전문의가 반드시 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병리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검진기관은 병리과 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간 압	1. 간초음파 검사 2.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Alphafetoprotein) - 일반(정성법) - 정밀(정량법) · 핵의학적방법으로 검사한 경우	나-944 (E9441) 나-421 (C4211) 나-421 (C4212) 나-421 (C7421)	○ 다음기준으로 선정된 자 - 해당연도 전 2년간 간암발생고위험군 ^{주5)} 중 만 40세 이상자 - 과년도 일반건강검진(생애전환기 건강진단 포함)의 B형 간염표면항원 검사 또는 C형 간염항체 검사 결과가 ‘양성’인자 중 만40세 이상자	○ 간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실시하고, 실시한 의사가 직접 판독하여야 한다. ○ 간초음파 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는 반드시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는 일반검사(정성법) 또는 정밀검사(정량법)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에서 정밀검사 방법으로 측정하였을 경우에는 검사 결과값과 함께 검진기관의 기준치 및 측정단위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대장암	1. 분변잠혈검사 ○ 일반(정성법) ○ 정밀(정량법)	나-65 (B0651) 나-65-1 (B0653)		○ 분변잠혈검사는 정성법인 분변잠혈반응검사와 정량법인 분변혈색정량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 분변혈색정량법으로 측정하였을 경우에는 검사 결과값과 함께 검진기관의 기준치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2. 대장이중조영검사 ○ 촬영 및 판독료	다-203 (HA032)	○ 분변잠혈검사 결과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자	○ 의사는 수검자의 대장 정결 상태와 과거 병력 등을 확인해야 한다. ○ 대장이중조영검사에서는 반드시 다음의 영상은 포함되어야 한다.

구 분	검사항목	검진비용(분류번호)	대상자 ^{주6)}	검 사 방 법
	○ 필름료 및 재료대 - 14"× 17" : 4매 - 10"× 12" : 6매 ○ CR(DR), Full PACS ○ 조영제 및 전 처치재료	치료재료 금액표^{주1)} 방사선영상진단료^{주2)} 약제 금액표^{주3)} · 바륨분말(barium sulfate) 800g · 전처치하제(Magnesium carbonate, citric acid) 250ml		- 직장, 하행결장, 비만곡, 횡행결장, 간만곡, 상행결장 및 회맹부 영상 각 1매 - 에스결장 영상 2매 이상 - 대장 전체(overhead) 영상 ○ 대장이중조영검사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반드시 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검진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 분류코드 721, 성분코드 113911APD - 분류코드 721, 성분코드 312200ALQ
	3. 대장내시경검사 ○ 검사료 ○ 전 처치재료	나-766 (E7660) · 전처치하제(polyethylene glycol, KCl, NaCl, sodium bicarbonate, sodium sulfate, anhydrous) 1EA(4L) (분류코드 721, 성분코드 312300APD) · 전처치하제(polyethylene glycol 3350, potassium chloride, sodium chloride, sodium sulfate anhydrous, sodium ascorbate, ascorbic acid) (분류코드 721, 성분코드 616300APD)	○ 분변잠혈검사 결과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자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 결과 대장용종이나 대장암이 의심되는 자	○ 대장내시경검사는 의사가 직접 실시한다. ○ 의사는 검사 전 수검자의 대장 정결 상태와 출혈 경향, 과거 병력 등을 확인해야 한다. ○ 내시경 검사는 대장내시경으로만 실시하며 맹장까지 관찰함을 원칙으로 한다. ○ 의사는 대장내시경 검사 도중에 필요한 경우 용종절제술을 실시할 수 있다.^{주4)} ○ 감염예방을 위한 내시경 세척 및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4. 조직검사 ○ 내시경하생검 ○ 생검용 FORCEP ○ 병리조직검사	나-854(나-766×20%) 치료재료 금액표^{주1)} 나-550 (C5911) 1-3개 (C5912) 4-6개 (C5913) 7-9개	○ 대장내시경검사 도중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실시	○ 병리조직검사는 병리과 전문의가 반드시 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병리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검진기관은 병리과 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구 분	검사항목	검진비용(분류번호)	대상자 ^{주6)}	검 사 방 법
		(C5914) 10-12개 (C5915) 13개 이상		
유방암	1. 유방촬영(양측) ○ 촬영 및 판독료 ○ 필름료 및 재료대 - 유방전용필름:4매 ○ CR(DR), Full PACS	다-127 (G2704) 치료재료 금액표 ^{주1)} 18×24cm 4매 방사선영상진단료 ^{주2)}		○ 유방촬영은 좌우 각2회씩 표준촬영법으로 촬영한다. - 내외사위(mediolateral oblique, MLO) 촬영 - 상·하위(cranio-caudal, CC) 촬영 ○ 유방촬영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반드시 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검진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자궁경부암	1. 자궁경부세포검사	나-592 (C5920)		○ 진찰과 검체채취는 해당 검진기관의 의사가 반드시 직접 하여야 한다. - 브러쉬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면봉은 사용할 수 없다. ○ 자궁경부세포검사의 판독은 병리과 전문의 또는 교육받은 해당관련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Papanicolaou 염색법으로 실시한다. - 검체를 채취하여 슬라이드에 도말 후 즉시 슬라이드를 95% 에탄올에 담그거나 분무형 고정액(의료용)으로 고정한다. ○ 중복자궁인 수검자의 경우 각각 검사를 실시한다.

주1)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주2) 위장조영검사, 대장이중조영검사, 유방촬영시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 또는 디지털촬영장치(DR),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사비용 심사와 지급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행위)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중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의 점수를 따른다.

주3)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주4) 위내시경 및 대장내시경검사 중에 실시한 이물제거술(자761) 또는 용종절제술(자770) 비용은 해당 처치료에서 내시경검사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하여 청구함

주5) 간암발생고위험군 : 간경변증, B형 간염항원 양성, C형 간염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주6) 암검진 대상자의 연령기준은 「암관리법 시행령」 별표1을 따른다.

※ 분류번호(코드) :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적용(분류번호만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분류코드 생략)

※ 암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종별가산을 및 차등수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환산지수는 병원 또는 의원 유형별 분류 점수 중 높은 단가로 적용 한다.

[별표2]

암검진 결과 판정기준

암종	판 정 구 분		판 정 기 준
공통	기존 암환자		위·간·대장·유방·자궁경부암환자로 치료 중이거나 재발하지 아니한 경우
위암	이상소견없음		검사결과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
	양성 질환		양성병변이지만 추가 또는 정기적인 검사나 관련 치료 후 추적관찰이 필요한 경우
	위암의심		위암이 의심되어 즉시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위암		(병리)조직진단결과 신규 또는 재발한 위암환자로 즉시 치료가 필요한 경우
	기타 ()		위암과 관련이 없는 기타질환 및 소견으로 추가검사, 치료 또는 관찰이 필요한 경우 ※ 암검진 결과기록지의 검사결과 ‘관독소견, 관찰소견’의 ‘기타’ 소견이 있을 경우 그대로 기입
간암	이상소견없음		검사결과 간암 관련 이상소견이 없어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
	양성 질환		양성병변이지만 추가 또는 정기적인 검사나 관련 치료 후 추적관찰이 필요한 경우
	간암의심		간암이 의심되어 즉시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기타 ()		간암과 관련이 없는 기타질환 및 소견으로 추가검사, 치료 또는 관찰이 필요한 경우 ※ 암검진 결과기록지의 검사결과 ‘관찰소견’에서 ‘기타’ 소견이 있을 경우 그대로 기입(간 이외에 발생한 암종의 경우 기타로 기입)
암종	판 정 구 분		판 정 기 준
대장암	분변잠혈 검사	음성	분변잠혈검사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
		양성	분변잠혈검사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대장이증 조영검사· 대장내시 경검사· 조직진단	이상소견 없음	검사결과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
		양성 질환	양성병변이지만 추가 또는 정기적인 검사나 관련 치료 후 추적관찰이 필요한 경우
		대장암의심	대장암이 의심되어 즉시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대장암	(병리)조직진단결과 신규 또는 재발한 대장암환자로 즉시 치료가 필요한 경우
		기타()	대장암과 관련이 없는 기타질환 및 소견으로 추가검사, 치료 또는 관찰이 필요한 경우 ※ 암검진 결과기록지의 검사결과 ‘관독소견’ 또는 ‘관찰소견’의 항목에서 ‘기타’ 소견이 있을 경우 그대로 기입

유방암	이상소견없음	검사결과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 ※ 다른 이상 소견 없는 치밀유방일 경우 해당
	양성질환	암과 관련이 없는 양성병변 및 기타질환으로 더 이상 검사가 필요 없는 경우 ※ 암검진 기록지의 검사결과 ‘판독소견’의 ‘기타’ 소견이 있을 경우 그대로 기입
	유방암의심	유방암이 의심되어 즉시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판정유보	유방촬영술 결과로 판정할 수 없는 상태(판정곤란)로 추가검사, 이전 사진 비교 또는 관찰이 필요한 경우 ※ 치밀유방일 경우는 해당 없음
자궁경부암	이상소견없음	검사결과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
	염증성 및 감염성 질환	※ 염증 또는 감염성질환으로 암검진 결과기록지의 검사결과 ‘유병별진단(세포진단)’에서 ‘음성’ 판정이면서 추가소견이 있을 경우 그대로 기입
	상피세포 이상	양성병변일 가능성이 높으나 자궁경부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소견으로 즉시 추가검사 또는 정기적인 검사나 관련 치료 후 추적관찰이 필요한 경우
	자궁경부암 의심	자궁경부암이 의심되어 즉시 추가검사가 필요한 경우
	기타()	자궁경부암과 관련이 없는 기타질환 및 소견으로 추가검사, 치료 또는 관찰이 필요한 경우 ※ 암검진 결과기록지의 검사결과 ‘유형별진단(세포진단)’에서 ‘기타’ 판정이 있을 경우 그대로 기입

[별표3]

암검진비용 정산 기준

구 분	정 산 기 준	삭 감 액
가. 일부항목 미 실시	○ 검사 항목 중 일부항목을 미 실시한 경우 - 유방촬영, 위장조영검사, 대장이중조영검사, 방사선영상 진단과 조직검사, 자궁경부세포검사 불량인 경우 포함	해당항목 검사비용
	○ 문진표 미첨부 또는 문진 문항 미 입력한 경우 ○ 판정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상담 및 행정비용 "
나. 비대상자 검진 실시	○ 해당 검사 비대상자에게 검사를 실시한 경우 ○ 검진 실시기간(가능기간)을 경과하여 검진을 실시한 경우 ○ 해당 검진주기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검진을 실시한 경우	해당항목 검사비용 해당 수검자 검진 비용 "

암검진 문진표

☐ 일반건강검진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수검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자택	
					핸드폰	
☐ 건강보험가입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E-mail 주소		
주 소						우편번호
						-

※ 암 검진(공통) 관련 문항

※ 아래 문항을 읽고 자신의 현재 상태에 해당하는 답에 ‘○’표시해 주십시오.

1. 현재 신체 어느 부위에든 불편한 증상이 있습니까?
① 예 (증상: _____) ② 아니오

2. 최근 6개월 간 특별한 이유 없이 5Kg 이상의 체중감소가 있었습니까?
① 아니오 ② 체중감소 (kg)

3. 본인, 부모, 형제, 자매, 자녀 중에 현재 암에 걸리신 분이나 과거에 걸리셨던 분이 계십니까?

암의 종류	없다	모르겠다	있 다 (복수선택 가능)				
			본인	부모	형제	자매	자녀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기타 (_____ 암)							

4. 귀하는 다음의 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검 사 명		검사 시기			
		10년 이상 또는 한적 없음	1년 미만	1년이상~ 2년 미만	2년이상~ 10년 미만
위암	위장조영검사(위장 X선 촬영)				
	위내시경				
유방암	유방촬영				
대장암	분변잠혈검사(대변 검사)				
	대장이중조영검사(대장 X선 촬영)				
	대장내시경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세포검사				
간암	간초음파	한적 없음	6개월 이내	6개월에서 1년 사이	1년보다 오래전에

※ 위암, 대장암, 간암 관련 문항

※ 해당되는 곳에 'O'표 해주십시오.

5. 현재 또는 과거에 진단받은 위장질환이 있으십니까?

질환명	위궤양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위용종	기타	없음
질환유무						

6. 현재 또는 과거에 진단받은 대장 항문질환이 있으십니까?

질환명	대장용종(폴립)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치질(치핵, 치열)	기타	없음
질환유무						

7. 간(肝)질환이 있으십니까?

질환명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	만성 B형간염	만성 C형간염	간경변	기타	없음
질환유무						

※ 유방암 및 자궁경부암 관련 문항(여성분들만 응답해주세요.)

8. 월경을 언제 시작하셨습니까?

① 만_____세 ② 초경이 없었음

9. 현재 월경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① 아직 월경이 있음 ② 자궁적출술을 하였음

③ 폐경 되었음 (폐경연령 : 만 _____세)

10. 폐경 후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호르몬 제제를 복용하고 계시거나 과거에 복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호르몬 제제를 복용한 적 없음 ② 2년 미만 복용

③ 2년 이상~5년 미만 복용 ④ 5년 이상 복용 ⑤ 모르겠음

11. 자녀를 몇 명 출산하셨습니까?

① 1명 ② 2명이상 ③ 출산한 적 없음

12. 모유 수유 여부 및 총 수유기간은?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1년 미만 ③ 1년 이상 ④ 수유한적 없음

13. 과거에 유방에 양성 종양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습니까?

(양성 종양이란 악성종양인 암이 아닌 기타 물혹, 덩어리 등을 말합니다)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음

14. 피임약을 복용하고 계시거나 과거에 복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피임약을 복용한 적 없음 ② 1년 미만 복용

③ 1년 이상 복용 ④ 모르겠음

암검진 비용청구서(공단 청구분)

청구기관	검진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소재지 (☎)							
청구처(지사)										
청 구 내 역 (단위 : 원, 명)										
검진구분	검사항목	검진비용			실시인원			청구금액		
		공단부담		수검자 일부부담	공단부담		수검자 일부부담	계 (G=H+I)	공단부담	
		100% (A)	90% (B)	10% (C)	100% (D)	90% (E)	10% (F)		100% (H=A×D)	90% (I=B×E)
계	—									
위 압	암검진 상담료									
	공휴일검진 가산료									
	위장조영검사	직접촬영								
		CR or DR								
		Full Pacs								
	위내시경검사									
	조직검사	생검용 FORCEP								
		1-3개(pieces)								
		4-6개(pieces)								
		7-9개(pieces)								
10-12개(pieces)										
13개이상(pieces)										
간 압	암검진 상담료									
	공휴일검진 가산료									
	간초음파검사									
	혈청알파 태아단백	일반								
		정밀 정밀(핵의학적)								
대장암	암검진 상담료									
	공휴일검진 가산료									
	분변잠혈 검사	일반(정성법)								
		정밀(정량법)								
	대장이중 조영검사	직접촬영								
		CR or DR								
		Full Pacs								
	대장내시경검사									
	조직검사	생검용 FORCEP								
		1-3개(pieces)								
		4-6개(pieces)								
		7-9개(pieces)								
10-12개(pieces)										
13개이상(pieces)										
유방암	암검진 상담료									
	공휴일검진 가산료									
	유방촬영	직접촬영								
		CR or DR								
Full Pacs										
자궁 경부암	암검진 상담료									
	공휴일검진 가산료									
	자궁경부세포검사									
※ 계의 청구금액란은 각 검사항목의 청구금액 합계를 10원미만 절사하여 기재 우리기관에서 20 . . . ~ 20 . . . 까지 실시한 암검진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청구일 : 20 년 월 일 대표자(청구인) : (인)										
첨 부 1. 암검진결과기록지 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2. 암검진문진표 건										
					※표는 공단에서 기재					

주) CR은 컴퓨터영상처리장치, DR은 디지털촬영장치, Full Pacs는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을 의미함

암검진 비용청구서(보건소 청구분)

☐ 건강보험 ☐ 의료급여

청구기관		검진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소재지			
청구처(지사)						(☎)			
						통보처(보건소)			
				청구내역		(단위 : 원, 명)			
검진구분	검사항목	검진비용		실시인원		청구금액			
		의료급여(A)	건강보험(B)	의료급여(C)	건강보험(D)	계 (E=F+G)	의료급여(F=A×C)	건강보험(G=B×D)	
계	—								
위암	암검진 상담료								
	공휴일검진 가산료								
	위장조영검사	직접촬영							
		CR or DR							
		Full Pacs							
	위내시경검사								
	조직검사	생검용 FORCEP							
		1-3개(pieces)							
		4-6개(pieces)							
		7-9개(pieces)							
10-12개(pieces)									
간암	암검진 상담료								
	공휴일검진 가산료								
	간초음파검사								
	혈청알파태아단백	일반							
		정밀							
대장암	암검진 상담료								
	공휴일검진 가산료								
	분변잠혈검사	일반(정성법)							
		정밀(정량법)							
	대장조영검사	직접촬영							
		CR or DR							
		Full Pacs							
	대장내시경검사								
	조직검사	생검용 FORCEP							
		1-3개(pieces)							
		4-6개(pieces)							
		7-9개(pieces)							
		10-12개(pieces)							
유방암	암검진 상담료								
	공휴일검진 가산료								
	유방촬영	직접촬영							
		CR or DR							
Full Pacs									
자궁경부암	암검진 상담료								
	공휴일검진 가산료								
	자궁경부세포검사								
※ 계의 청구금액란은 각 검사항목의 청구금액 합계를 10원미만 절사하여 기재 우리기관에서 20 . . . ~ 20 . . . 까지 실시한 암검진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청구일 : 20 년 월 일 대표자(청구인) : (인)									
첨부 1. 암검진결과기록지 2. 암검진문진표		건 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표는 공단에서 기재				

위암 검진 결과 기록지

☐ 일반건강검진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자격구분	☐ 건강보험가입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통보처 국가암보건소 ()
주소	우 - ,				

구분	검사항목 (검사일/검사장소)		검사결과
위암	위장조영검사 년 월 일 ☐ 내원 ☐ 출장	판독소견 ※ 최대 3개까지 기입	1. 이상소견없음 2. 위염 3. 위암의심 4. 조기위암 5. 진행위암 6. 양성 위궤양 7. 위용종 8. 위 점막하종양 9. 기타 ☐ 식도/위 정맥류 ☐ 식도염 ☐ 식도 점막하종양 ☐ 식도암 ☐ 십이지장궤양 ☐ 십이지장악성종양 ☐ 십이지장점막하종양 ☐ 직접기입()
		병변위치 ※ 판독소견 번호를 위치에 따라 괄호에 최대 3개까지 기입	1-1. 위저부 () 1-2. 위체부 () 1-3. 위전정부 () 1-4.위분문부 () 2-1. 소만 () 2-2. 대만 () 2-3. 전벽 () 2-4. 후벽 ()
		관찰소견 ※ 최대 3개까지 기입	1. 이상소견없음 2. 위염 3. 위암의심 4. 조기위암 5. 진행위암 6. 양성 위궤양 7-1. 위용종 7-2. 위선종 8. 위 점막하종양 9. 기타 ☐ 식도/위 정맥류 ☐ 식도염 ☐ 식도 점막하종양 ☐ 식도암 ☐ 십이지장궤양 ☐ 십이지장 악성종양 ☐ 십이지장 점막하종양 ☐ 직접기입()
		병변위치 ※ 관찰소견 번호를 위치에 따라 괄호에 최대 3개까지 기입	1-1. 위저부 () 1-2. 위체부 () 1-3. 위전정부 () 1-4.위분문부 () 2-1. 소만 () 2-2. 대만 () 2-3. 전벽 () 2-4. 후벽 ()
	내원	조직진단 ※ 결과통보 제외항목	1. 필요 2. 불필요
		조직진단 ☐ 생검용 FORCEP ☐ 1-3개 ☐ 4-6개 ☐ 7-9개 ☐ 10-12개 ☐ 13개 이상 ※조직진단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기입 불필요 ※조직진단 다수일 경우 가장 좋은 진단기입	1. 이상소견없음 2. 위염 3. 염증성 또는 증식성 병변 4. 저도선종 또는 이형성 5. 고도선종 또는 이형성 6. 암의심 7. 암 ☐ 관상샘암종 (☐ 고분화, ☐ 중분화, ☐ 저분화) ☐ 유두상샘암종 ☐ 반지세포암종 ☐ 위림프종(☐ 저도, ☐ 고도) ☐ 점액(샘)암종 ☐ 샘편평상피암종 ☐ 편평상피암종 ☐ 소세포암종 ☐ 미분화암종 ☐ 신경내분비종양 ☐ 직접기입() 8. 기타 ☐ 위의 비상피성종양 ☐ 식도염 ☐ 식도 암종 ☐ 식도 점막하종양 ☐ 십이지장궤양 ☐ 십이지장 암종 ☐ 십이지장 점막하종양 ☐ 직접기입()

판정 및 권고	판정구분 ※검사결과에 따라 판정구분이 다수일 경우 가장 중한 판정구분을 기입		권고사항 ※판정구분에 따른 판정기준 기입 이외에 별도로 300자 이내로 기입		
	1. 이상소견없음 2. 양성질환 3. 위암 의심 4. 위암 5. 기타 () ☐ 기존 위암환자				
	결과통보일	년 월 일	검진 의사	면허(자격)번호	
	판정일	년 월 일		의사명	(서명)

간암 검진 결과 기록지

☐ 일반건강검진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자격구분	☐ 건강보험가입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통보처	국가암보건소 ()
주소	우 - ,				

구분	검사항목 (검사일/검사장소)		검사결과
간암	간초음파검사 년 월 일 ☐ 내원 ☐ 출장	관찰소견 ※ 최대 3개까지 기입	1. 이상소견없음 2. 거친 에코상 3. 간경변 4. 이형결절 5. 양성질환 ☐ 혈관종 ☐ 간 낭종 ☐ 지방간 6. 간암의심 ①간암형 ☐ 단발성 결절형 ☐ 다발성 결절형 ☐ 대종괴형 ☐ 미만형 ②병변위치 ※ 간암형에 따라 괄호에 최대 3개까지 기입 ☐ I ☐ II ☐ III ☐ IV ☐ V ☐ VI ☐ VII ☐ VIII ③병변크기 ☐ <2cm ☐ 2cm~5cm미만 ☐ ≥5cm 7. 기타 ☐ 담관확장 ☐ 간내 석회화 ☐ 복수 ☐ 비장종대 ☐ 직접 기술 ()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년 월 일 ☐ 내원 ☐ 출장		☐ 정성법 1. 음성 2. 양성 ☐ 정량법 1. 검사결과: () 2. 검사단위: ☐ ng/ml ☐ IU/ml 3. 검사기관 기준치: () 이하

판정 및 권고	판정구분 ※검사결과에 따라 판정구분이 다수일 경우 가장 중한 판정구분을 기입		권고사항 ※판정구분에 따른 판정기준 기입 이외에 별도로 300자 이내로 기입		
	1. 이상소견없음 2. 양성질환 3. 간암 의심 4. 기타 () ☐ 기존 간암환자				
	결과통보일	년 월 일	검진 의사	면허(자격)번호	
	판정일	년 월 일		의사명	(서명)

대장암 검진 결과 기록지

☐ 일반건강검진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자격구분	☐ 건강보험가입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통보처 국가암보건소 ()
주소	우 - ,				

구분	검사항목 (검사일 및 검사장소)	검사결과
대장암	분변잠혈검사 년 월 일 ☐ 내원 ☐ 출장	☐ 정성검사 : 1. 음성 2. 양성 ☐ 정량검사 : 1. 음성 2. 양성 검사결과: (ng/ml) [기준치: (ng/ml 이하)]
	대장이증 조영검사 년 월 일 내원	1. 이상소견없음 2. 대장용종 (크기: mm) 3. 대장암 의심 4. 대장암 5. 기타 ☐ 치핵 ☐ 비특이성 장염 ☐ 허혈성 장염 ☐ 궤양성 대장염 ☐ 크론병 ☐ 장결핵 ☐ 대장 게실증 ☐ 대장 점막하종양 ☐ 림프구 증식 ☐ 직접기입()
	병변위치 ※ 판독소견 번호를 위치 에 따라 괄호에 최대 3 개까지 기입	1. 회장 말단부 () 2. 맹장 () 3. 상행 결장 () 4. 간 만곡 () 5. 횡행 결장 () 6. 비 만곡 () 7. 하행 결장 () 8. 에스 결장 () 9. 직장 () 10. 항문 ()
	대장 내시경검사 년 월 일 내원	1. 이상소견없음 2. 대장용종 (크기: mm/절제처치 ☐ 실시 ☐ 미실시) 3. 대장암 의심 4. 대장암 5. 기타 ☐ 치핵 ☐ 비특이성 장염 ☐ 허혈성 장염 ☐ 궤양성 대장염 ☐ 크론병 ☐ 장결핵 ☐ 대장 게실증 ☐ 대장 점막하종양 ☐ 림프구 증식 ☐ 직접기입()
	병변위치 ※ 판독소견 번호를 위치 에 따라 괄호에 최대 3 개까지 기입	1. 회장 말단부 () 2. 맹장 () 3. 상행 결장 () 4. 간 만곡 () 5. 횡행 결장 () 6. 비 만곡 () 7. 하행 결장 () 8. 에스 결장 () 9. 직장 () 10. 항문 ()
	조직진단 ※ 결과통보 제외항목	1. 필요 2. 불필요
	조직진단 ☐ 생검용 FORCEP ☐ 1-3개 ☐ 4-6개 ☐ 7-9개 ☐ 10-12개 ☐ 13개 이상 ※조직진단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기입 불필요 ※조직진단 다수일 경우 가장 중한 진단기입	1. 이상소견없음 2. 염증성 또는 증식성 병변 3. 저도선종 또는 이형성 4. 고도선종 또는 이형성 5. 암의심 6. 암 ☐ 샘암종(☐ 고분화, ☐ 중분화, ☐ 저분화) ☐ 점액(샘)암종 ☐ 반지세포암종 ☐ 샘편평상피암종 ☐ 편평상피암종 ☐ 소세포암종 ☐ 수질암종 ☐ 미분화 암종 ☐ 악성림프종 ☐ 신경내분비종양(맹장과 직장의 1cm이하 종양제외) ☐ 직접기입() 7. 기타 ☐ 신경내분비종양 ☐ 비상피성종양 ☐ 항문암 ☐ 말단회장부위 암 ☐ 직접기입()

판정 및 권고	판정구분 ※검사결과에 따라 판정구분이 다수일 경우 가 장 중한 판정구분을 기입		권고사항 ※판정구분에 따른 판정기준 기입 이외에 별도로 300자 이내로 기입		
	1. 음성 2. 양성 또는 1. 이상소견없음 2. 양성질환 3. 대장암 의심 4. 대장암 5. 기타 () ☐ 기존 대장암환자				
	결과통보일	년 월 일	검진 의사	면허(자격)번호	
	판정일	년 월 일		의사명	(서명)